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

[시행 2021.03.25.] [약관 2021.02.24., 개정]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예수금담보대출, 증권담보대출 등의 개인용 여신에 관련된 회사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2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등"이라고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7.10.16.>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회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회사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04.28.>

⑥ 회사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삭제 2011.8.22.><개정 2021.02.24.>

1. 채무자·보증인{연대보증인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담보권의 설정·변경·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만큼, 해당대출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개정 2014.04.28.>

③ 회사는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채무에 관한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채무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신설 2011.08.22.>

⑤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담한다.<신설 2011.08.22.>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설정자)
2.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회사(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회사(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회사(채권자)와 채무자(설정자)가 각 50%씩 부담

제3조의2(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1.02.24.>

② 삭제<2021.02.24.>

③ 삭제<2021.02.24.>

④ 삭제<2021.02.24.>

⑤ 삭제<2021.02.24.>

⑥ 삭제<2021.02.24.>

[본조신설 2016.12.26.]

[제목개정 2021.02.24.]

제4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담보의 제공)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곧 회사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②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하는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간(이하 "추가담보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추가담보 제공 요구시 추가담보 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채무자는 추가담보 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0.01.27.>

제5조의2(담보권의 실행)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후 채무자가 추가담보 제공기간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 만료일의 익영업일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가 추가담보 제공 요구시 제5조제2항 단서의 용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부족이 해소되도록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0.01.27.]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개정 2009.03.03., 2017.10.16., 2020.12.14.>

1. 제 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개정 2017.10.16.>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개정 2017.10.16.>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4조,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개정 2010.01.27.>

1.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거나, 회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익영업일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0.01.27.>

제7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3.03.>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② 제6조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6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6.>

제8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한다.

제9조(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6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사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삭제<2017.10.16.>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한다)과를 상계 할 경우, 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6.>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 보증인 ·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치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치금 등을 가입할 때 회사와 약정한 이율로 한다.<개정 2017.10.16.>

제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계한 예치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1조(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가 제9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10조에 의하여 상계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변제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전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회사가 증서·신고서 등 제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등에 변경이 생긴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기로 한다.<개정 2013.12.16.>

제14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채무자가 제1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지체없이 회사앞으로 이를 통지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2.24.]

제17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회사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18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 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개정 2013.12.16.>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6.>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6.>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12.16.>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6.>

제19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한국증권금융
www.ksfc.co.kr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개정 2013.12.16.>

부칙 <2021.2.24>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는 이 약관 시행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는 이 약관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